

**부산광역시영도구체육회**  
**회비 관련규정**

# 부산광역시영도구체육회 회비 관리규정

제정 2021년 12월 6일  
개정 2023년 06월 09일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체육회(이하 “체육회”라 한다) 정관 7조(권리와 의무) 제2항 및 제41조(재원)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거하여 체육회 회비 납부를 통해 회비사용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인 회비관리를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규정은 체육회 임원 및 정회원종목단체에 한하여 적용한다.

**제3조(회비분담금액)** 회비의 분담액은 다음 각호와 같고 상임임원(사무국장), 감사는 면제한다. <개정 2023.06.09.>

1. 회 장 : 연간 1,000만원
2. <삭제 2023.06.09.>
3. 부 회 장 : 연간 200만원<개정 2023.06.09.>
4. <삭제 2023.06.09.>
5. <삭제 2023.06.09.>
6. 이 사 : 연간 100만원 <개정 2023.06.09.>
7. 대 의 원 : 정회원 연간 30만원

**제4조(회비의 조정)** 회비를 조정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승인하여야 한다.

**제5조(회비의 납입)** ① 회비는 당해 회계연도 정기총회 이후 상반기(1월~6월)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.

② 보선 또는 새로 선임되는 이사는 이사회 의결 전 이력서와 회비를 선납하여야 하며, 이사회 부결 시 당사자에게 반환한다.

**제6조(회비의 사용)** 회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

수 있다.

1. 이사회 및 총회 개최 비용
2. 각종 대회지원금 또는 포상금
3. 각종 위원회 업무수행 실비
4. 사무국 직원의 수당 및 교육, 복지 등에 필요한 비용
5. 체육회 사무국 운영 또는 사업비
6.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사무국에서 결정한 사항

**제7조(회비 미납자에 대한 징계)** ①회비 미납자는 이사회 및 총회에서 표결권 및 발언권을 제한한다.

② 회계연도 시작 후 다음연도 정기총회 이전까지 미납시 사무국에서 이사회에 보고한다. 단, 사무국은 미납자에 대하여 3회에 걸쳐 납부안내를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하여야 하며, 3회차에는 제명 조치를 명기한 후 통보한다.

③ 회비 미납으로 인하여 제명된 자는 체육회에 영구적으로 활동할 수 없으며, 총회에 대의원으로도 참여할 수 없다.

④ 종목단체장의 연회비가 미납되었을 시 해당 종목단체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단체로 지정되며, 체육회 정관 제9조(관리단체의 지정) 제3항에 의해 해당 단체 임원은 당연 해임된다.

**제8조(미비사항)**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 등 통상 관례에 따른다.

## **부 칙(2021.12.06.)**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규정 제4조(회비의 조정) 및 제5조(회비의 납입)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회비 납입 기산일은 2021년 1월 22일 본회 첫 이사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
## **부 칙(2023.06.09.)**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규정 제4조(회비의 조정) 및 제5조(회비의 납입)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회비 납입 기산일은 2023년 2월 27일 본회 이사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